

실내공기질관리의 정책방향



환경부 생활공해과 | 박일호 과장

실외공기(대기)는 주요 환경문제로 인식되어 이미 다양한 법과 정책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실내공기질의 경우 학계의 연구결과와 사회적 관심증가로 인하여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무실, 지하공간, 각종 실내업소, 학교, 병원 등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80%)을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내공기질은 대기나 수질과 달리 각 시설별 관리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정확한 현황파악이 곤란하고,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해 각 시설마다 자동측정망(TMS) 설치가 어려워 시설별 오염도 변화추이 또한 파악이 곤란하다.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신축 건물일수록 오염도가 높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 환경부 조사에서도 신축공동주택의 약 절반이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일본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등 '새집증후군'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 1989년 지하공간환경기준권고치를 마련, 지하공간에 대한 관리를 시작으로, 96년에는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해 지하생활공기질을 관리하고,

2004년 5월부터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 신축공동주택을 포함한 다중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실내공기질법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피해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기준이상 방출하는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 하도록 해 유지기준 오염물질을 연 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측정,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계시판에 60일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적정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여, 건축의 전단계에서 실내공기 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보다는 사전 예방에 더욱 힘쓰고, 실내공기질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및 재정지원 확대 등 적정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